루소의『사회계약론』한계 고찰

은은기*

〈차 례〉

1. 서론
2. 사회계약을 통한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입법
3. 사회계약의 체결 이후 공동체이익의 침해와 그 대책
4. 결론

【국문초록】

루소는 부자가 빈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타락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불평등과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정한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동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정치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루소는 그러한 정치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개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의사인 일반의지가 확립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일반의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실행하고 준수한다면 도덕적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루소는 비록 유능한 입법자에 의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개인, 사회단체, 정부 그리고 통치자가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준수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하지 않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적인 특수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루소는 그 세 주체 중에서도 정부와 통치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하여 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따라서 루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통치자와 그의 정부가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다.

루소는 전제정부와 전제군주의 독단을 막고 사회계약을 유지할 방책으로 전 인민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정기 집회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주권자인 전체 인민은 정기집회의 결의를 통해 전제정부를 교체하거나 심지어 정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체의 교체는 사실상 사회혁명에 해당한다. 이점에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루소는 사회혁명 방법으로 현실성이 없는 전체 인민의 결의를 내세웠지 무력 투쟁이나 무력 혁명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점에서 루소의 사상과 폭력투쟁의 개입이 불가피했던 프랑스 혁명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란 어렵다. 또한 루소는 교육과 종교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으나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특히 통치자의 심성을 바꾸어 공동체의 이익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불법을 자행하는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 인민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루소의 생존 당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커서 전시민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무리였다. 더욱이 전 인민이 모여 정부의 교체를 결정한다할지라도 절대왕정이 그 결정을 안 따를 경우 그에 대한 확실한 제재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당시 왕권신수설을 내세우면서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던 절대왕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루소는 당시 프랑스 절대왕정의 패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제어: 사회계약론, 루소, 일반의지, 직접민주주의, 절대군주, 사회혁명

1. 서론

루소는 스위스 출신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당시 최하급 노동자인 도제로 일했다. 16세에 제네바를 떠난 후 파리에서 살롱을 중심으로 한 사교계에 적응치 못하고 다른 계몽사상가와 견해 차를 보였다. 그는 “인간불평등기원론”(1755)에서 평등하다고 여겼던 자연 상태로부터 불평등한 사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18세기 중엽 계몽사상가들은 산업과 기술진보에 따른 물질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보장을 기대하였으나 루소는 자신의 저서인『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그 혜택이 단지 사회의 일부분에게만 한정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오히려 사회의 불행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사회로 연합하는 역사적 경로를 걷는 동안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게 되어 불평등, 이익대립, 전제정, 인간소외 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불행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미 문명 속에, 국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미 주어진 사회에서 그러한 불행을 생겨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지가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루소는 그러한 개인적 불행은 물론 사회적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적 해결책이며, 이에 해당하는 방안이『사회계약론』에 제시되어 있다. 둘째 방안은 가정교육을 통한 해결책인데 그의 저서인『에밀』에 잘 나타나 있다. 셋째는 개인의 명상과 자성을 통한 해결책인데 역시 루소의 저서인『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찾아볼 수 있

다.[1]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루소는 정치적 방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루소는『나르시스』에서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에서 나온다"[2]고 강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정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사회계약론』은 루소 사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려면 계약 체결동기, 체결 시점, 계약 당사자, 계약의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을 어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계약의 모든 절차와 계약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긴 하다. 장효민은 최근에 사회계약론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대표적 사회계약이론가들의 이론을 인간관 및 계약의 목적, 계약의 역할 및 계약의 절차, 계약 전 상황, 계약 후 상황 등 전체 계약 상황과 관련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쟁점들을 검토한 바가 있다.[3]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을 비교 검토하는데 치중하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절차, 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루소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들이 모두 자신의

---

1) 김성옥,「루소의 인민주권론의 정당화 논변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l4.

2) Jean-Jacques Rousseau, *Narcisse*, Oeuvres complètes *III*,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Bernard Gagnebin et Marcel Raymond, Gallimard, 1964, p. 969. 박영욱,「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시대와 철학』13-1, 2002, p. 186에서 재인용.

3) 장효민,「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3 참조.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를 형성함과 동시에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사회계약으로 간주했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의지의 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그 무오류성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의지의 한계를 밝히려면 계약당사자들이 왜 계약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또한 계약을 어길 경우 처벌이 계약으로 성립된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보장을 해주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의지에 따라 형성된 정치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을 누가 제정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법을 어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살필 것이다.[4] 여기서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개인,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또는 통치자를 들 수 있다. 이 세 구성원이 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하면서 사적인 특수이익을 추구할 경우 루소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특히 정부 또는 통치자가 사적인 특수이익을 추구할 경우 어떤 제재 방안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필자는 루소의 저서인 사회계약론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2. 사회계약을 통한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입법

루소는 진정한 사회계약의 목적이 “공동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4) 이봉철은 사회계약이론에서 계약의 절차적 측면이 아닌 계약 성립 이후의 효력 증명문제-확인문제, 정당성문제, 번복문제를 핵심 연구 주제로 삼아 사회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이봉철,「‘사회계약이론’의 난제와 그 해결모색: 실종된 ‘사회질서’의 탐색·복구를 통해서」,『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25-3,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pp. 61-95 참조.

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공동체의 역할은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자유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 개인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루소는 그러한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진정한 사회계약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회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계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계약의 체결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루소가 주장한 사회계약의 핵심은 일반의지를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루소는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의지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5] 결국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전체 개인들인 것이다. 루소는 개인의 권리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각자가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 버리고 나면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고, 또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6] … 만약 사회계약으로부터 본질적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하나의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정치공동체가 형성된다."[7]

---

5) 진정한 사회계약이란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의 집약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6) Jean-Jacques Rousseau,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Paris : Messidor-Éd. Sociales, 1987 (이하 DCS로 약함), p. 40.

7) *DCS*, p. 41.

그렇다면 그러한 정치공동체(이하 공동체로 약함)[8]를 형성하는 시기 즉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대해 루소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가? 루소가 말한 진정한 사회계약이란 자연상태에서 사회를 형성하는 시점에 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 사회계약으로 체결된 기존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는가?

루소는 "정치체 또는 주권자는 신성한 사회계약에 따라 처음으로 생긴 것"[9]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것은 루소가 말하는 진정한 사회계약이 자연상태에서 사회를 형성하는 시점에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루소가 살았던 당시의 현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에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차라리 루소가 기존의 국가들은 이미 거짓 사회계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짓 사회계약을 대체할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루소는 "루소는 인간 사회가 타락에 빠졌을 경우 그것을 바로 잡을 수단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억압하는 형태의 사회를 자유로운 형태의 정치적 윤리적 공동체로 대치시키는 것"[10]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이는 루소가 기존 사회를 사회계약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도 품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루소는 사회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

8) *DCS*, p. 44. 그러한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 루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개인들의 결합에 의해 공동의 자아와 생명과 의지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모든 개인들의 결합에 따라 형성된 공적 인격 즉 공동체를 옛날에는 도시국가(cité)라고 불렀으나, 오늘날에는 공화국(république) 또는 정치체(corps politique)라고 부른다.

9) *DCS*, p. 56.

10) *DCS*, p. 58.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루소가 당시 프랑스의 전제적이고 억압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할 생각을 품었는지를 간파해내기 어렵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쓴 동기는 억압적이고 타락한 절대왕정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그의 저서인 사회계약론은 당시의 프랑스 절대왕정 사회가 전제정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 인민이 다시 모여 사회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사회계약론은 당시 현실을 사실상 도외시한 것이다.

루소는 원리상 일반의지는 개인의 의지와 달리 공중의 이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올바르다고 한다. 일반의지는 약간의 실수를 할지라도 중대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루소는 일반의지가 항상 공동의 선과 이익을 추구할지라도 사적인 특수 의지에 억눌리게 되면 침묵하게 되고 결국은 정의를 실천하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11]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 후 일반의지에 따르지 않고 개별 의지에 따를 경우 달리 말해 사회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해 루소는 "정치체나 주권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그 계약행위를 위반한다는 것은 곧 자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반의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별 의지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는 우선 법률이 공동체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부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누가 법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정할 것인가? 루소는 법의 제정자로 이른바 '입법자'가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

11) *DCS*, p. 75.

"개인은 참된 행복을 보고도 그것을 배척하는 수가 있고, 공중은 행복을 바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양쪽 모두를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개인들에게는 그들의 의지를 이성에 일치시키도록 강제해야 하고, 공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중은 계몽되어 정치체에 있어서 그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각 부분의 정확한 협력이 이루어져 전체는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입법자가 필요한 이유이다."[12]

루소는 개인이나 공중에게 참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줄 법을 제정하려면 유능한 입법자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루소는 입법자의 주도하에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억압 없이 잘 작동하리라고 보았다. 입법자의 도움으로 제정된 법에 따라 좋은 정부가 결성되며, 이 경우 개인들은 개별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입법자로 모세(Moses)[13], 리쿠르고스(Lycurgos)[14], 누마

12) 루소는 입법자란 탁월한 재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민족적 영웅이다. 호렙산에서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돌아와 파라오와 싸워 이겨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정작 모세 본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14)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지도자다. 그의 행적은 플루타르코스의 전기에 자세히 나온다. 그는 기원전 700년 이후 각종 정치제도를 마련했다. 그는 2명의 왕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된 원로회(게루시아)를 설치했다. 왕을 제외한 원로회원은 모두 60세 이상의 종신직으로 민회에서 선출했다. 또한 민회의 개최장소와 권한을 정했다. 민회는 왕, 원로회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했다. 5명의 감독관(에포로스)을 두었다. 감독관은 60세 이상의 귀족 중에서 민회에서 선출하며 왕을 견제했다. 토지를 추첨을 통해 균등하게 나누었다. 스파르타 토지를 9천 개의 분할지(클레로스)로 나누어 스파르타 시민에게 나눠주었다. 라코니아의 토지를 3만 개의 클레로스로 나누어 페리오이코이(주변인이란 뜻으로 스파르타에서 생산을 담당한 계층)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금은 화폐 제도를 폐지하

(Numa)[15] 등을 들고 있다. 입법자는 사회계약을 주도하여 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설파했다.[16]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부딪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모세, 리쿠르고스, 누마와 같은 입법자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입법자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필연적 논리가 없다면, 사회계약을 통해 정당한 통치의 법칙을 만들려는 루소의 시도는 그 성공여부가 입법자의 '우연'한 출현에 의존해야 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루소가 말한 입법자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불과 한두 명씩 요행히도 등

고 철로 만든 화폐를 사용했다. 외국인의 입국과 내국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쇄국정책을 실시했다. 공동식사제도(15명에서 많게는 400명이 함께 식사)와 아고게 훈련제도를 실시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체검사를 통해 허약하다고 판단하면 죽도록 방치되었다. 일곱 살이 되면 가정이 아닌 집단생활을 14년 동안 했다. 20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졌다. 30세가 되어야 민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결혼이 허용되었다. 여자들도 각종 체육훈련을 받았다. 리쿠르고스의 개혁입법은 델피 신탁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한다.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묻기 위해 리쿠르고스는 델피로 떠났다. 떠나면서 그는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델피에서 그는 그가 만든 법이 훌륭하다는 신탁을 받았다. 리쿠르고스는 식음을 전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시민들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키기로 했으니 죽어서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법이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 플루타르코스는 누마가 폼포니우스의 네 아들 가운데 막내이며, 로마가 건국된 날(기원전 753년 4월 21일)에 태어났다고 전한다. 기원전 717년, 로물루스가 죽자, 로마 원로원에서는 누마를 새 임금으로 선출하였다. 누마가 처음에 행한 일로는 전쟁과 평화를 알리는 야누스 신전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신전은 로마 시의 길인 아르길레툼의 아래쪽에 건설되었다. 로마의 이웃 나라와 평화가 확실할 때는 신전 문이 닫혀 있었다. 누마는 후대에 자신의 타고난 지혜와 경건함으로 찬사를 받았는데, 전설에 따르면 넘페 에게리아가 그로 하여금 현명한 입법자가 되게끔 가르쳤다고 한다. 그는 대신관의 직위를 만들었으며, 유피테르, 마르스, 퀴리누스의 사제인 플라멘을 설치하였다. 또한 태양력과 태음력을 보정하여 역법 개혁을 단행하였다.

16) *DCS*, p. 87.

장하여 입법자의 기능[17]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입법자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을 제정해야할 시점에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18] 이 경우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출현하기를 무한정 기다리던가 아니면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으로 성립되는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유능한 입법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입법의 대상인 인민들이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준비된 인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인민이 어떤 인민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기원이나 이해관계 또는 관습 등의 일치로 이미 결합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법률의 실재적인 구속을 당해보지 않은 인민, 뿌리 깊은 관습이나 미신에 빠져 있지 않은 인민, 불의의 침입을 받고도 짓밟히게 되리라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인민, 이웃 나라들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웃 나라들에 대항할 수 있으며 침략국을 격퇴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민, 모든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는 동시에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과중한 부담을 누구에게도 지울 필요가 없는 인민, 다른 인민의 도움 없이도 지낼 수 있고 또 다른 인민을 도울 필요도 없이 지낼 수 있는 인민, 부유하지도 빈곤하지도 않으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민, 그리고 끝으로 옛날 인민의 견실성과 새로운 인민의 온순성을 겸비한 인민이다"[19]

사실 루소가 말한 입법에 적합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인민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인민들로 구성된 나라나

---

17) 루소는 일단 법률 제정이 완수되면 입법자는 더 이상 사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입법자의 주도 하에 맺어진 사회계약으로 성립한 법률들이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 *DCS*, p. 98.

지역을 찾기란 더더욱 힘들 것이다. 루소는 입법의 대상으로 적당한 인민들 달리말해 일반의지를 잘 수행할 인민들을 갖춘 지역의 실례로 코르시카 섬을 들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코르시카 주민들이 개별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는 모범사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근자에는 테러가 난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루소의 주장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사회계약의 체결 이후 공동체이익의 침해와 그 대책

사회의 구성원이 일반의지를 잘 수행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행에 젖어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루소는 비록 유능한 입법자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일부 사회단체, 정부 또는 통치자가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적인 특수이익 추구에 몰두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먼저 개인이 일반의지를 거스르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공동체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사회계약은 공허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종하도록 공동체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치게 함으로써 시민을 개인적인 종속으로부터 보호하는 조건이고 정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시민으로서의 각종 약속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유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20]

이어서 루소는 국가 내의 어떤 사회집단도 특수하고 사적인 집단이

20) *DCS*, p. 77.

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전체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일반의지가 충분히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에 독자적인 사회가 없어야 하고 각 시민이 오직 자기의 의지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위대한 리쿠르고스의 독특하고 숭고한 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만약 독자적인 사회가 있다고 하면, 솔론이나 누마나 세르비우스가 한 것처럼, 그 수를 증가시켜 독자적인 사회 간의 불평등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예방조치만이 일반의지가 항상 명백히 표명되고 인민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21]

루소는 공동체 내에 개별적인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구성원 수를 늘림으로써 그 특수한 집단이익을 희석시켜 상이한 집단들 간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례로 고대 아테네의 솔론(Solon)의 경우를 보면 솔론은 원래 귀족들만이 가졌던 투표권을 부유층에게까지 확대하여 권력을 독점한 귀족들에 대한 평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22]

이에 더해 루소는 국가의 행정권을 위임받은 정부와 통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 대해서

---

21) *DCS*, p. 78.

22) 솔론(Solon, BC 630경~560경)은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로서 귀족계급의 권력 독점을 폐지하고 대신 부유한 시민이 통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곡물·기름·포도주 등 주요 농산물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조사해 그에 따라 시민을 4가지 소득층으로 나누었다(화폐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같은 가격의 농산물을 기준으로 평가했음). 이때부터 정치적 특권은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재산 구분을 토대로 배분되었다. 모든 시민은 민회(에클레시아)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고 민회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법률과 포고령을 의결하고 관리를 선출하며 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다루었다. 극빈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민회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신설된 400인회에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 그보다 높은 정부 직책은 상위의 두 소득층에 속하는 귀족과 부유층 시민의 몫이었다. 이처럼 솔론은 귀족이 지녔던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부유층에게도 확대하여 귀족들이 가진 특권을 제한했던 것이다.

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신민과 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된 중간적인 단체로, 법률을 집행하고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시키는 책임을 지는 기구”인 정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을 ’행정관’ 또는 ’군주’, 즉 ’통치자’라 불렀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법의 집행을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권자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할 보조기구인 ‘소수나 다수의 대리인’ 즉 ‘국가의 통치권자’[23]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러한 협약 준수의 보장이라는 현실적 필요는 공적 권위와 그 행사를 담당할 행정관 지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어져 마침내 “공적권위의 위탁이라는 위험한 역할을 사적 개인인 왕이나 몇 사람의 통치자에게 맡기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24]

이제 루소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통치자와 그의 정부가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다. 루소는 “인민들이 정부형태나 통치자를 바꾸는데 신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치자는 인민의 권리를 찬탈했다는 말을 듣지 않고서도 인민의 의지에 반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치자는 위임받은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쉽사리 자신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구실 아래, 올바른 질서를 새로 조직하려는 집회를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치자는 인민에게 침묵은 지치도록 강요하면서 그 침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러 위법 행위를 조장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공포 때문에 입도 열지 못하고 있는 자를 통치자를 지지하는 자라고 우겨대면서 감히 입을 여는 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23) 루소는 전 국민이 법의 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법의 집행자는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24) *DCS*, p. 92.

정부가 일단 정권을 잡기만 하면 조만간 주권을 찬탈하고야 마는 것은 모두 이런 용이한 수단 때문이라는 것이다.[25]

루소는 전제정부와 전제군주의 그러한 독단을 막고 사회계약을 유지할 방책으로 인민들의 정기 집회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주권자인 전체 인민의 정기집회는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또 그 폐단이 다가오는 시기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집회가 아무런 형식적인 소집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스스로가 법률 침범자이고 국가의 적이라는 것을 공언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집회를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집회는 어떤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는 "사회계약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집회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의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 1안 : "주권자는 현재 정체의 변경을 원하는가?"
제 2안 : "인민은 현재 통치를 위임받고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위임하기를 원하는가?"[26]

루소는 모든 시민이 집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부의 교체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회계약조차도 파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7] 이것은 전 인민이 한 곳에 모여[28] 만장일치로 결정할 경우 정체까지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정체의 변화란 사회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루소가 제시한 사회혁명의 방법은 전체

25) *DCS*, p. 93.
26) *DCS*, p. 96.
27) *DCS*, p. 99. 루소는 그러한 변혁은 항상 위험하며 따라서 일단 수립된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28) 전 인민이 한 곳에 모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루소는 직접민주정을 옹호했던 것이다.

인민의 결의였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었다. 이점에서 루소의 사상은 사실상 폭력적인 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프랑스의 경우 부당한 절대왕정을 교체하기 위해 전 인민이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가 제시한 방법은 분명히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루소는 전 인민이 모여 정부의 교체를 결정한다할지라도 절대왕정이 그 결정을 안 따를 경우에는 종교나 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치자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이익을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앞세우게 만들려면 일반의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반의지가 활성화되려면 개인들이 올바르게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서는 종교나 교육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하며, "습속, 관습, 여론"과 같이 시민의 마음 속에 새겨진 관행의 확고한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 신민과 통치권자로 하여금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할 때 양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29]

루소는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은 일반이익을 앞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경쟁과 사치에 대한 정념과 상호예속적인 불평등을 유발하는 환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도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30] 사실 이러한 교육 및 종교활동을 통해 개인을 교육하여 변화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신민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통치권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거나 신민들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성인이 되어 머리가 굵을 대로 굵어

29) *DCS*, p. 122.
30) *DCS*, p. 125.

버린 통치권자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 악행을 일삼을 경우 그를 다시 태아교육,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종교교육으로 그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는 요행수에 불과하다. 전체 신민의 안전을 그러한 요행수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악행을 일삼는 통치권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루소가 목격했던 시대의 주요 문제는 통치자인 프랑스 절대왕정이 자행하는 악행이었다. 그런데도 루소는 일반 인민들과 통치권자가 개별 이익 대신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또한 루소는 주권자의 실질적인 대리인인 통치자가 법을 어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점에서 루소와 프랑스 혁명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다.

4. 결론

루소는 인간이 사유재산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불평등한 예속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부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유권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계약을 제안하게 되고 그 계약에 따라 법이 정해지고 그 법에 따라 정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치권력은 부자들의 고안물이었다는 것이다. 루소는 당시 프랑스의 절대왕정이 바로 부자들의 고안물인 정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루소가『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당시 왕권신수설을 내세우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던 절대왕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루소의『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는가의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루소는 부자가 빈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타락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불평등과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루소는 진정한 사회계약의 목적이 “공동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정치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개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의사인 일반의지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막아 일반의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입법가와 그 법을 준수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인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회계약의 체결과 그에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시점에 그러한 유능한 입법가가 등장해야 하는데, 이는 요행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기에 적합한 수많은 자질을 구비한 이른바 고상한 시민을 현실 속에서 찾기란 지난한 과제였다. 결국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일반의지를 잘 드러내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유능한 입법자의 등장도 어려웠고 그리고 고상한 시민도 사실상 존재하기지 않았기 때문에 루소의 입법론은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루소는 전제정부와 전제군주의 독단을 막고 사회계약을 유지할 방책으로 전 인민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정기 집회를 내세우고 있다. 즉 주권자인 전체 인민은 정기집회에서 전제군주의 폐단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를 교체하기로 결정하면 곧 전제정부의 폐단은 해소된다고 보았다. 즉 모든 시민이 집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부의 교체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회계약조차도 파기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인민의 결의에 의해 정체변경 즉 사회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소의 사상은 그 당시 유럽에서 전 인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전 인민이 모여 정부교체나 정체변경을 결정한

다할지라도 절대왕정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확실한 제재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통치자가 악행을 일삼는다면 사회혁명 이외에는 대책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루소는 사회혁명 방법으로 현실성이 없는 전체 인민의 결의를 내세웠지 무력 투쟁이나 무력 혁명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점에서 루소의 사상과 폭력투쟁의 개입이 불가피했던 프랑스혁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란 어렵다. 또한 루소는 교육과 종교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으나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특히 통치자의 심성을 바꾸어 공동체의 이익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당시 왕권신수설을 내세우면서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던 절대왕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루소는 당시 프랑스 절대왕정의 패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루소 사상과 그 당시 현실과의 이러한 괴리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일반의지 개념을 통해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문제인 개인과 공동체와의 조화, 권력의 균형을 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서양 사상사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Bertram, Christopher, “Rousseau’s Legacy in Two Conceptions of the General Will: Democratic and Transcendent”, *Review of Politics 74-3,* 2012, pp. 403-419.

Ettin, Mark F., “Rousseau’s Social Contract and the Functional Integrity of the Group-as-a-Whole”, *Group Analysis* 30-1, 1997, pp. 49-65.

Rousseau, Jean-Jacques,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Paris : Flammarion, 2008.

Rousseau, Jean-Jacques,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Paris : Messidor-Éd. Sociales, 1987.

Rousseau, Jean-Jacques, *Narcisse*, Oeuvres complètes III,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Bernard Gagnebin et Marcel Raymond, Paris: Gallimard, 1964.

Russell, Bertrand,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 Unwin, 1979.

Simpson, Matthew, "A Paradox of Sovereignty in Rousseau's Social Contract", *Journal of Moral Philosophy* 3-1, 2006, pp. 45-56.

Spurlin, Paul M., "Rousseau's "Social Contract": An Interpretive Essay", *Modern Language Quarterly* 31-3, 1967, pp. 385-388.

Swenson, James, "Rousseau, the Revolution and the Republic", in Lauritsen, Holger Ross and Thorup, Mikkel, *Rousseau and Revolution,* New York, NY: Continuum; 2011, pp. 175-196.

Talmon, J. L., *The Rise of Totalitarian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52.

Viroli, Maurizio, *Jean-Jacques Rousseau and Well-ordered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Wokler, Robert, 이종인 역, 『루소』, 시공사, 2001.

김성옥, 「루소의 인민주권론의 정당화 논변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9.

김용민, 『루소의 정치철학』, 서울: 인간사랑, 2004.

김정덕, 진희권, 「루소의 사상에 일고찰」, 『사회과학논총』 9,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pp. 285-298.

박영욱,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시대와 철학』 13-1, 2002, pp. 179-208.

이봉철, 「'사회계약이론'의 난제와 그 해결모색: 실종된 '사회질서'의 탐색·복구를 통해서」,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5-3,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pp. 61-95.

장효민,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2013.

The Problems in *The Social Contract* of Rousseau

Eun, Eun-Gi

The Social Contract argued against the idea that monarchs were divinely empowered to legislate; as Rousseau asserts, only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have that all-powerful right. The heart of the idea of the social contract may be stated simply: each of us places his person and authority under the supreme direction of the general will, and the group receives each individual as an indivisible part of the whole.

It is to subordinate one's private will to general will of community, which promotes patriotism. Thus, to interpret Rousseau as a republican envisages a certain kind of person whose identity is predicated on the collective value of community and who is incorporated into the community strongly.

We cannot deny the strong political community that Rousseau draws. It is, however, in the intimate society that one can preserve the individuality. With the public and political community, Rousseau also concerns the private one. Another point the author chose to make, was the belief that when the government exceeds the boundaries set in place by the people, it is the mission of the people to abolish such government, and begin anew. For Rousseau, the means to abolish the government is to call a regular meeting of the all people and only to decide there to change the government or the political system. The change of political system means a sort of social revolution. However, his method of the social revolution was not the violent social revolution but the decision by the people at the regular meeting. He suggested to educate the people to make them give priority to the collective interest in case of the denial of the decision of the meeting by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 In fact, it is almost impossible to educate a king to make him give priority to

the collective interest because it takes long time to change an adult by the education. In this respect, the social contract thought of Rousseau was remote from the reality of the absolute monarchy in France.

Key words: social contract, Rousseau, general will, direct democracy, absolute monarch, social revolution,

은은기
소속: 계명대 사학과
주소: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보성아파트 201동 905호
전화: (053) 580-5124
전자우편: eeg@kmu.ac.kr

이 논문은 2013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31일 게재 확정함.